

의안번호	2210539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5. 7. 28.
추계번호	25A29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 실시 중인 재정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되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재정사업 중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¹⁾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2025년도 예산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15억원임
- * [참고자료]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사업 현황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됨

- 다만, 개정안은 제안이유²⁾를 통해 현행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개정규정 또한 지원 대상 비용을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의 예산이 확대되거나, 소상공인 외의 중소기업에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과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매출액 등 요건,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와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하여야 하나, 해당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³⁾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 또한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개정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안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회계, 코드) -내(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5년도 예산(2차추경)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22)	소비·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비대면·디지털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117,185)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경영지원 S/W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32,490)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캐시노트, 도도포인트 등 서비스형 S/W 1년 사용료 지원 - 지원목표 5,000개소, 지원한도 30만원, 국비지원율 100% * 다만, 프랜차이즈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보급 시 90%	1,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